

광주지방법원 2020. 4. 22 선고 2019가단51302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

담당변호사 박성찬

변론 종결 2020. 3. 18

판결 선고 2020. 4. 22

주 문

1.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4,866,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망 C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는 2015. 12. 13. 사망하였고, 상속인들로는 처인 D, 자녀들인 피고 B, 원고 A, 소외 E, F, G, H가 있다.

나.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I 전 1119㎡, J 대 344㎡ 중 297/350지분, 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44.4㎡가 있었고, 위 부동산들(이하 합쳐서 '이 사건 부동산들'이라 한다)의 시가는 합계 1,214,000,000원이다.

다. 피고는 2016. 1. 8.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K, L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2016. 2. 29.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4187호로 2015. 12. 13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 소외 K,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라. 피고는 2016. 1. 20. 원고에게 97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내지 6, 14,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데,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61,866,666원(=

1,214,000,000원 $\times$ 2/15)을 지급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7,000,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64,866,666원(=161,866,666원 - 97,000,000원)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

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 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(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2007. 4.26. 선고 2004다5570 판결,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2321판결 등 참조).

민법 제999조 제2항은 "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,상속권의 침 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.

1'고 규정하고 있다.

위 기간이 경과하 면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간은

제척기간이고,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 능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재산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 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,또 재산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 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므55판결 등 참조).

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 는 없다(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므20판결).

나. 구체적인 판단

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 상속지분만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 고 있다.

비록 이 사건 부동산들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등기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근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.

을 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. 1. 20.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 의 매매계약서를

통해 매매가액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직접 날인한 후 피고로부터

97,000,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는 늦어도 위 97,000,000원을 지급받은 날에는 자신의 상속지분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.

결국,사건 소가 그로부터 제척기간 3년이 경과된 뒤인 2019. 4. 29. 제기되었으므로,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.

판사 이선희